

第15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3.11.7.~11.8.)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5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3

II. 제15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5

III. 제15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11

IV. 부록

1. 의사일정안 1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7일 (금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58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15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1시 02분 폐식)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7일 (금요일) 11시 03분

議事日程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5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
3.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5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곽동철 외 3인)
4.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3분 개의) 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께서서는 KBS 청주 FM방송 개국행사 참석으로,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시·도 학교체육담당 과장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제158회-제1차 본회의]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2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광동철 외 3인으로부터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청원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10월 29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옥경 교육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청원 처리를 위해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10월 30일 공고 제2003-10호로 제15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6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3년 10월 6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0월 24일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277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화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57회 정기회에서 처리된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과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

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은 2003년 10월 30일 집행청에 이송하였고, 11월 1일 제15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초·중학교설립및이전계획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 4일 집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에 대하여 소개위원인 진옥경 교육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산회 후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1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 청원채택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청원의건

(11시 08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진옥경 위원

학교급식이 실시된 지 여러 해 지난 지금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가 만

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충북 도내에서 이런 여론들이 점차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안에 담긴 지향들을 포괄적인 저의 호소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교육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안 청원 채택 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급식 개선은 지역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이며,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간절한 바램이 담겨있는 것이기에 이를 받드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양질의 학교급식은 건강한 학생과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은 수입개방으로 날로 어려워만 가는 우리 농민들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출로입니다.

전국에서 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만시지탄이 있지만 각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도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위

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여러 지역의 예를 참고하고 우리가 처한 시점과 조건을 최대한 살려 쓸모있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지역과 중앙이 호흡을 맞추어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즈음, 그들의 염원을 담은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를 만들고자 청원한 이안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가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7일 교육위원 진옥경.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1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광동철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신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은 즉시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기수 위원님과 진옥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8일 (토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채택의건

(11시 00분 개의)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연가중으로, 김용호 부교육감께서는 학생경진대회 시상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청원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송대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송대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광동철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1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주요내용을 말씀드

리면, 본 청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사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여 심의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적법과 위법을 따지기보다는 교육위원들이 길을 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또한 급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 발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광주, 전북도 교육위원 발의로 조례 제정 추진중에 있고, 또 경남은 우리 도와 유사한 내용의 청원을 접수하여 일단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각 기관마다 어디가 주무부서인지 어느 관할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오는 18일 국무조정실이 8개 부처 장관 및 관계자 회의를 열어 시민단체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등 변화되는 과정 속에 낡은 법을 가지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소중한 도민들의 뜻을 꺾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지금은 도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논의는 18일 이후를 기다렸다가 발표 추이에 맞추어서 적합한 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생급식에 안전을 기하고 국내에서 생

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본 청원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하여 헌법 제117조제1항에 법령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안이란 법령에 위반·저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으로 광주광역시외의 경우 WTO협정위반, 상위법령 위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미비 등으로 재의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동 조례제정 청원을 채택하려면 반드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시설설치비, 유지비,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와 식품비만을 도서벽지학교와 농어촌학교에 국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을 해도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은 무효이므로 본 청원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위법령과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례제정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급식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학교급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로 생각되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역할과 책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으로 보면 당초 충청북도 소관 조례로 제정할 것을 초점에 두고 만든 조례안으로 도교육청 소관 조례로는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위의 사항들로 비추어 볼 때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충청북도에 이송하는 방법과 시민단체에서 취하하여 다시 도의회나 충청북도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실사규칙 제10조 제1항제2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안 검토 결과 제5조제1항, 제2항, 제4항과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그리고 제11조제3항, 제4항 및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지사 소관 사항이므로 도교육청 소관 조례로 제정할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지사에 속한 권한을 도교육청 소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려해 본다면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져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실효성과 합법성이 중요한데 현 시점에서 볼 때 본 조례제정안 내용 중에는 상위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지사의 소관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위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본 청원의 주된 사무처리 주관 담당부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조례제정 청원의 주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사무에 해당된다면 동 사무의 주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의 내용과 조례안 제7조제1항의 재정적인 지원과 제9조제2항의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11조제3항, 제4항의 지정판매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조항은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육위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되므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도의회에서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법리에 맞게끔 병행·제정하여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58회-제2차 본회의]

다음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질의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업회생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청원의 취지는 좋으나, 청원조례안의 내용중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지사의 역할과 책무에 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위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급식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어 조례 제정의 실효성 및 합리성의 문제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에 대하여는 표결결과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진옥경 위원

의장님, 본회의에서 위원이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상일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대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채택의건은 동 청원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진 위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는데.....

● 진옥경 위원

토론이 아니라 발언할 수 있는 형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5분 발언은 하루 전에 해야되고, 당일 날 신상발언이나 혹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의장 이상일

현재는 의사진행발언 외에는.....

● 진옥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 의장 이상일

네, 진옥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반드시 본 청원에 관한 건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 진옥경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저기 단상으로.....

● 진옥경 위원

앞으로 나갈까요?

● 의장 이상일

예

● 진옥경 위원

고맙습니다.

(진옥경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진옥경 위원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채택하지 못한다
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
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
부된 안건을 2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간의 지금 오늘 받지 않기로 한 그
관계법령이 바뀔 것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근
거 자료조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결정은 매우 무성의한 것이
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승복할 수 없고 온 도민들

과 함께 교육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성토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여러 가지 법령이, 근
거법령이 바뀔 것임에도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장내 소란)

● 고규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일

의사진행발언 없습니다.

오늘 이 청원은 받느냐 안받느냐 그 보
고로 끝나는 겁니다.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8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폐회)

[제158회-제2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제15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2.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일
위 원	이 기 수	이 기 수
위 원	진 옥 경	진 옥 경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상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5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3. 11. 7. ~ 11. 8.(2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1월 7일(금)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5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3. 11. 7. ~ 11. 8.(2일간) 2.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 청원의 건 (진옥경 소개교육위원 보고) 3.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청원심사소위원회	
11월 8일(토)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 청원 채택의 건 <input type="checkbox"/> 폐 회	

第15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請願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5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25
II. 부 록	
1. 청원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53

請 願 審 查 小 委 員 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1월 7일 (금요일) 11시 17분

議事日程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

(11시 17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청원심사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

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송대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 김남훈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대현

인사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요번 급식조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건강식을 제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19분)

● 위원장 송대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김남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대현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남훈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위원님 인사말씀간단히 하시죠.

● 간사 김남훈

위원장을 받들어 간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19분)

● 위원장 송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 의견을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4.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견

(11시 20분)

● **위원장 송대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견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송대현**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진옥경 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냥 저의 의견을 내도록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저도 의견을 그냥 내도록 하죠.

● **위원장 송대현**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개위원인 진옥경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아니고 의견 제시도 좋습니다. 의견제시를 어차피 내일 본회의에 우리 소위원회 활동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 **간사 김남훈**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 **위원장 송대현**

예. 김남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간사 김남훈**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조례안청원을 해 주신 우리 동료 진옥경 위원님의 마음에 충심으로

로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진작 이러한 조례안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 학생급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가끔가다 해 봤는데, 다만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서 검토한 결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5조1항 충청북도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수 농산물과 이 학교 급식재료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 충청북도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학교급식시설비와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항에 충청북도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 제5조의 1항, 2항, 4항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할 그런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지사한테 권한이 속하는 사항이라 생각되어서 1항, 2항, 4항은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7조1항에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야된다. 이것도 위

와 마찬가지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9조2항에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거기에 소번호 1번에서 9번까지의 모든 상황이 이것은 저희들 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부지사,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재해관리실장 이런 것들이 쪽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 기관의 소속한 공무원을 과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이것도 역시 도지사가 관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1조3항에 보면 충청북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항 충청북도지사는 지정판매업자 자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13조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본 급식조례는 도지사 소관 사항으로 충청북도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아울러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제정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조례로 제정할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한 권한을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본 조례는 해당기관으로 본 조례안을 이송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남훈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조례안 제5조 1항, 2항, 4항, 제7조 지원방법의 1항,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제11조 3항, 4항, 제14조 등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의 소관이 아니고 도지사소관 사항으로 해당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말씀이었죠.

● 간사 김남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훈 교육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 고규강 위원

고규강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소관 학교급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진옥경 위원님 또 충청북도학교급식추진운동회본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청원서를 제출해 주신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할 조례안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조례로 제정해야 될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례안 제5조 규정에 충청북도는 학교급식시설비와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충청북도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제9조 규정에는 충청북도지사가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급식지원심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고 규정하였고, 제11조 규정에서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충청북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제13조 규정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이는 본래의 당초 충청북도조례로 제정할 것을 초점을 두고 만든 조례안으로써 도교육청 조례로는 부합되지 않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동 조례안을 검토해 봤더니 전라남도의 조례와 유사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남도의 조례안을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가 설치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규정하며 지도·감독권한도 전라남도 도지사가 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지사가 주관하여 규정하여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추진경우를 보았더니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의 조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도에서 발의하고 가결되어 전라남도지사가 회의에 제의요구를 하고 도의회에서 다시 원안가결함으로써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행정부장관이 제의요구사유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의 지원을 하는 조례를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면 이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학교급식조례를 도지사가 교육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이는 절차를 결한 행정행위라고 보아 위법하다고 봅니다.

만약 위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충청북도나 도의회에서 동 조례안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서 가결하는 방법으

로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WTO협정에 저촉되는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충청북도의 조례로 채택이 된다면, 일단은 우수농산물의 구입에 따른 지원금이 확대되어 학교급식운영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경우를 보면 제의요구사유를 WTO협정위반, 상위법령 위반, 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 미비 등으로 제의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동 조례안도 반드시 수정·보완을 하여 조례로 채택한 이후에 타 시도의 실태를 지켜보면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서서히 개정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은 청원법 제9조 규정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관서가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는 주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충청북도에 이송하는 방법과 시민단체에서 취하를 하여 다시 도의회나 충청북도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조례로 제정할 것을 초점으로 두고 만든 조례안으로써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2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

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시설설치비, 유지비,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와 식품비만을 도서벽지학교와 농어촌학교에 국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돈이 많이 드는 학교급식시설을 지원을 해야한다고 규정을 해도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를 적용할 수가 없고, 또한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은 무효로써 반드시 상위법령과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을 해야 조례로 채택이 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써 자치법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관하여 헌법 제117조제1항에 법령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안이란 법령에 위반 저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본 위원도 학교급식조례추진운동본부 지도위원으로서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앞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의 조례내용상 충청북도교육청조례로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고규강 위원님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말씀요지가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등에 의해서 이 조례는 도교육청 조례로 심의하기보다는 충청북도 조례로 심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전라남도 조례를 도의회에서 제정하는 것과 광주광역시조례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교육위원회조례로써는 부당하다는 얘기를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 하나 여쭙 보려고 합니다. 제10조2항 규칙에 하는 것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규칙.....

● 고규강 위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대현

청원심사규칙 제10조2항 규칙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고규강 위원

10조2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

● 위원장 송대현

10조2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끝으로 상위법령관계의 모순점을 말씀하면서 결론은 이 조례는 우리교육청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관련 주관 부서인 도조례로 이송하는

것이 이송이라는 표현을 잘 안쓰는 것 같아요.

● 고규강 위원

이송도 있고 취하도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10조2항 왜 우리는 규칙으로 따져야 하니까 청원심사규칙 10조2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위원장 송대현

우리 의사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10조2항 규칙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보세요.

● 의사국장 이상기

의사국장 이상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2항을 읽어드리면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제2항은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불가능한 경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위원님.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우리 진옥경 위원님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이고 급식조례를 제정해서 학생들의 급식이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우리농산물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은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말씀하신 고규강 위원님이나 김남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조례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위원으로서 제정할 수 없는 이런 조례항이 들어 있는 걸로 저도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례의 조항을 검토했습니다마는 5조2항에 위원결정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나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기획관리실장 이런 분들 위원으로 위촉하게끔 되어있고, 또 도지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감독할 수 있게끔 제한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의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교육부에다 질의를 한 내용을 이 공문에 첨가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일자가 2003년 11월 5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요지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 청원이 있는 경우 동 사무의 처리 주관 담당부서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했는데, 교육인적지원부의 견

토의권이 귀 교육위원회가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제정 청원의 주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사무에 해당된다면 동 사무의 주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국장님 이게 맞는 얘기죠.

● 의사국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런 질의내용을 우리 의과에서 받았 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급기관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보나 또는 우리 본 위원이 도지사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나 이런 것으로 봤을 경우에, 저희 교육위원으로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급식조례를 만들고 도의원들이 급식비에대한지원조례를 병행해서 만들어서 법례에 맞게끔 우리가 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서는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할 조례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대헌

이기수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우리 고규강 위원님이나 김남훈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취지는 동감을 하나 위원으로서 제정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위촉이라든가 재정적 지원, 감독의 제한을 도지사가 하고 있는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보다는 새로운 쪽의 말씀이 의사국에서 2003년 11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답이 그런 내용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함이 타당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의견으로써 우리교육청은 급식조례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조례를 따로따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의사국장님 11월 5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고 회답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국장 이상기

의사국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 의사국에서 위원님들의 청원심사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지난 10월 28일날 교육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회신 오기를 그 내

용이 지금 이기수 위원님과 같이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공문에 대해서 회신내용에 대해서 잠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질의요지는 '학교급식의 우수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청원이 있는 경우 동사무의 처리주관 담당부서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의견으로써는 '귀 교육위원회가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제정청원의 주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에 해당한다면 동사무의 주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되지만 질의요지 여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명확한 질의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 의사국장 이상기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대헌

기다리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 위원장 송대헌

고규강 위원님 그동안 말씀하시죠.

● 고규강 위원

전라북도도 학교급식조례안이 통과되었어요. 그건 왜그러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학교급식조례는 통과가 돼요.

근데 학교급식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라남도나 몇 군데는 도의회로 냈고 경상남도나 이런데는 교육위원회에서 내가지고 교육감에게 넘어가 가지고 과정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급식법, 급식법은 도교육청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왜 지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로 넘어 온다든가 하면 이상적이고 애들한테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좋은데, 우리 충청북도 여기 조례안을 낸 걸 보면 전부 도지사가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분이 왜 여기다가 청원을 접수시켰는가 저도 지도위원이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접수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대헌

고규강 위원님 전라북도도 통과됐습니까? 학교급식법만 통과.....

● 고규강 위원

통과됐죠. 학교급식법하면.....

● 위원장 송대현

근데 학교급식지원은 그러니까 도에서 학교 급식법만 통과됐다는 거죠.

● 고규강 위원

급식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도지사한테 돈을 얼마내라 할 권한이 없어요. 왜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동등한 관계거든요. 도에서 만든 걸 충청북도교육청이 실시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충청북도조례를 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너희들 실시해라. 돈 내라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송대현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 의사국장 이상기

예.

● 위원장 송대현

예. 말씀하시죠.

● 의사국장 이상기

의사국장 이상기입니다. 청원서 접수하신지 저희들이 청원서를 접수하고서 지난 10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질의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청원서 주관에 관한 질의 일. 학교급식재료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이 어려운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운동이 시민단체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청주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외 40개단체 공동대표자격으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소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 각동철 외 3인이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을 우리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 또는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세 번째,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할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수리하여 관련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에는 청원법 제9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본 청원의 합당한 처리주관에 관하여 견해를 듣고자 질의하오니 가능한 한 10월3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주관에 관한 질의, 견해 1 청원의 주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내용이므로 청원법 제9조 청원서의 처리에 의거 주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견해, 두 번째, 견해 2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이유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해석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충청북도지사의 의무 또는 책임에 속하는 사항 주요발췌내용 제5조제1항 우리 농산물 공급 종합계획 수립, 제5조제2항 학교급식시설비 및 우수 식재료 사용 등 재정지원, 제5조제4항 식재료 직접 공급계획수립, 제7조제1항 지원대상자 식재료 구입비 예산의 범위내 지원, 제8조 신청서 제출수립, 제9조제2항 도지사관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 위원장 행정부지사,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지정판매업자 지정취소 등 제13조 시행규칙은 도지사규칙으로 제정한다 등, 그리고 붙임으로써 청원서사본을 1부를 사본으로 해서 붙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의사국에서 질의는 의사국 자체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의 요청이 있어서 인가요?

● 의사국장 이상기

의사국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청원서를 접수를 하고서 위원님들의 심의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해를 질의를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국장님 판단이시라는 말이죠.

● 의사국장 이상기

판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저희들이 청원을 접수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 법에 합당하도록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진옥경 위원

저희들이라는 게 의사국장님을 위시한 의사국이라는 거죠.

● 의사국장 이상기

예. 그렇죠.

● 진옥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더 말씀 안하시는지요?

● 위원장 송대헌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 진옥경 위원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런 도민들의 뜻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육위원회가 하는 것이 가하다하는 행정자치부의 어떤 해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도위원님 고규강 위원님도 계셨고 그때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이 왔을

때 고위원님이 안계셨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더 충분히 못 나눈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사항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느냐 마느냐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저희들은 길을 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혹은 다른 데로 가봐라 이런 형태로 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또 누구나 그것을 실현을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이 좋다고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또 저희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광주나 또 경남 같은 곳도 전부 이런 형태의 내용을 교육위원을 통해서 발의한 여러분들 타 시도 부분들이 있지만 교육위원 발의가 광주, 전북 또 경남 이런 형태로 지금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남같은 경우 최근에 11월 4일날 청원을 접수는 한 것은 논의하기로 가결한 이유는 저희들이 자세히 그것들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받아 들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마다 전부

이러이러한 조항이 안 된다, 또 이것이 불가능하다. 또 의사국에서조차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과연 길을 찾아주는 제대로 그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은 경남교육위원회가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에 또한 진전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무조정실이 오는 18일날 8개 관계부처장관 및 책임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약청, 국무조정실에서 시민단체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이것이 지난 11월 4일 오후 10시 국정방송 KTV 클릭 10PM 생방송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조례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적법하나 위법하나를 따지기보다는 저희들이 도민의 뜻을 받아 안고 일단 그것을 받아 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도만 이런 것이 모든 것들을 무릅쓰면서 앞장서는 일도 아니고 경남에서도 일단 그 청원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는 어떠한 방식을 찾아 보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러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저촉되는 남은 법을 가지고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도민들의 뜻을 너무 무자비하게 꺾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면서 위원님들의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예,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규강 위원

제가 한가지 진옥경 위원님께 말씀드리죠.

● 위원장 송대현

정리하고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 이기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 지금 다섯 분 위원만 계시잖아요. 교육위원이 일곱 분이신데 한 분이 일 때문에 불참한 사항이고 의장님은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 빠져 계시고 하니까 우리 전체 의견을 수합하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도 한 위원으로서 의견이 어떠 하신지 피력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송대현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정리하면 적법과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교육위원님들로서 앞장 서서 길을 찾아주고 방법을 모색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관한 말씀 또 광주, 경남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좀 진전된 의견을 주어서 도민의 뜻을 받아주십사하는 의견이죠.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그리고 또 거기에 부언해서 왜 의사국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까하는 요지도 있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제가 진옥경 위원님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 위원장 송대현

예, 고규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규강 위원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거를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을 적에는 저희들 힘으로 도지사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해줘라 말어라 할 수가 없어요.

또 한가지는 경상남도에서도 그런 뜻에서 교육감에게 이송해 가지고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싸우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복잡하고 늦어지니까 제

가 급식조례추진운동본부에 있는 핵심 간부님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그게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도지사가 도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충청북도 또는 경상남도교육감은 지원해 주니까 학교급식에 아주 좋은 반응이 오는데, 여기다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조례라는 것은 도의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따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관이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를 도지사가 따라라 그거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로 이송해서 심의해 가지고 하면 적합한 건데, 이것을 힘없는 교육위원회로다가 돈을 줄 사람은 도지사인데 우리한테 접수하니까 이것이 걸리려면 몇년이 걸릴지 도지사가 아니면 그만인니까, 그래서 거기서 도지사의 안에 모든 것을 맞춰 가지고 만든 조례안인니까 그리로 갔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고 안해 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 이기수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민들이 참 요구를 하고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실효성과 합법성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위원님이 18일날 각의에서 예정사항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18일 이후에 그것이 합법화 되었을 때 문제가 없는 얘기겠고, 또 한가지 그러니까 그게 합법화 안된 지금 시점에서 그걸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한가지는 그게 지금 고규강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하지만 교육위원이 어떻게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왕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애를 썼다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급식조례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고 저쪽 도의원들한테 참 요구해 갖고서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고 하면 양쪽이 같이 맞아 들어간다면 당연히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얘기고 또 조례제정도 모순 없게끔 되는 얘기인데, 도지사를 우리가 교육위원이 어떻게 도지사한테 당신 급식비 지원해야 된다 또 국장이니 부지사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조례내용이 적합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민단체에서나 도민들이 요구하는 얘기를 강건너 불 보듯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취지는 좋다고 하지만 맞게끔 모든 걸 해야지 실효성을 거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냈다고 해도 조례 자체가 내용이 전혀 실현성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있는 조례밖에 안 되는 얘기니까 뭔가 법리에도 맞고 실효성도 있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교육위원들이 뭘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마냥 우리 교육위원도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법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법을 무시한 이러한 교육위원회 활동은 이게 누구나 참 법을 아는 분들한테 지탄을 받을 부분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님의 생각입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적법성 문제가 명확하다면 그것은 저도

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각 기관마다도 어디에 주부부서인지 어디에 관할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논란중에 있는 이런 법안을 우리는 그런 종례의 시각에서 본 그 고정되어 있는 법률로써 적용시키고 못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KTV 국정방송에서 언급된 부분을 고려할 때 저희가 이것에 대한 논의할 여지를 아직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행정자치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급식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조례에 관련하여서는 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여 조례성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8일날 발표를 우리들은 기대를 갖고 보고서 여기에서 제가 충북운동본부에서 전화를 통해서 총리실담당자와 전화를 했을 때, 충청북도 지금 조례안 학교급식조례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범위를 벗어난 도지사나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에 문제없게 관

런법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확답을 받았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의사국에도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논의하게 되는가 할 때 21일 정도로 이것들을 일정을 잡는다면 18일에 추이를 보고 혹은 21일 이후에라도 이것을 받아 안아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지 언제 우리가 학교급식법 따로 만들고 또 지원에관한조례안을 따로 만들고 부지 하세월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직 도의원들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 기간동안 충분히 도의원님들도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이 조례안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이것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무조정실의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지금 시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들 못한다고 나왔는데 며칠 있다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거 부결이라고 21일 하는데 18일날 발표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육위원들은 아무런 정보없이 지금 이것들을 그

냥 사전조사도 없고 연구도 없는 상태에서 발표했다 하면 어찌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제가 청원에서 중간에 소개했던 이유도 교육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는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은 이 청원을 받고 또한 18일 이후를 기다렸다가 그것의 발표의 추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든지 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적법 부적법을 논의할 단계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 18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다는 주 핵심내용이 됩니까?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송내용을 간접적으로 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국무조정실에 문의를 했을 때는 충북운동본부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고 도지사가 지원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지금 관련법을 수정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부처들끼리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그 발표를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걸 오늘 못한다고 하고 18일날 발표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걸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18일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들은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고 경남처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채널을 동원해서 그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지, 여기에서 지나간 법 지금 관련부처가 법개정을 하고 있는 중인 이 법을 가지고 저는 논의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 의견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종합된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하기전에 어제부터 이 말씀드릴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명분상으로 진옥경 위원님이 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귀여운 자녀에게 우리농산물을 주어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을 도모하고, 또 우리 지사로 지방자치단체장

관으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급식비를 지원을 해서 가난한 아이들도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는 이 취지나 목적에 반대할 위원님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이 조항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농산물 쓰는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농산물보다 우리농산물을 주어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뭐냐, 또 적법성 문제는 제가 단문해서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논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법에 위반되는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모릅니다.

다만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 조문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지금 많이 위원님들이 논의 했습니다마는 지사가 하여야 할 부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될 조례더라고요. 우리 교육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지사가 이거에 대한 신념과 가지고 조례를 해야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런 쪽으로 봐서 또 오늘 모든 위원이 그 부분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네요.

그런데 진위원님께서 18일날에 도지사가 이거에 대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거라는 말씀을 정보를 들었다는 얘기죠. 서류는 아니죠.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에 나와 있는 조례안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제정해 봤자 실효

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 실효성뿐만 아니라 조례제정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법리상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는 정말로 우리농산물하고 어린이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원법을 조례로 해 주시고 우리 교육감은 지원한다는데 벌써 좋다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귀여운 아이들을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는 학교급식법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법도 개정되면 더 좋고 학교급식조례를 우리도 조속히 제정하고 준비하고, 지사는 여기를 지원하고 우리농산물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설정하는 것이 조례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소견이고 이견 위원장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전체 종합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예. 말씀하십시오, 진옥경 위원님.

● 진옥경 위원

지금 이제 전북 안이 있습니다. 전북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도의회에서 수

정해서 더 강경한 형태의 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우수농산물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감의 의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 지금 지원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육위원회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급식법조례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일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제안하신 급식법의 형태로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시 도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첨가를 우리 우수농산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북 조례안의 최종적인 가결은 그 전체가 지원할 수는 있는 이런 형태로 확장을 시켜서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도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이 안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안에서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적인 논의 그리고 도의원들과 교감을 통해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제정하는 이런 당위성을 지금 만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5일인가에 교육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사이에 안 된다는 계속 찾기 위한 노력만 한 것이지 도의원들과 이런 노력들을 더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부분을 못 받겠다라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서 수정하더라도 잠정적인 저희들이 양보나 그리고 이후에 도의원들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노력, 또한 도지사의 어떤 협조를 구하면서 이 추이를 바라 봐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것이 전북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이 지금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전북의 사례가 어쨌든 교육위원회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고 그러니까 급식법 지금 이기수 위원님이나 고규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법의 수준으로 교육감이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우리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이나 이런 형태를 양보하면서 사실은 도의원들과의 공감속에서 도민들의 부응하는 어떤 수준을 최종으로 통과시키는 것 그것을 연내 목표로 지금 잡고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일언지하에 이것을 못 받는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간절하게 호소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에서 충청북

도가 늘 눈치보기보다도 눈치조차도 안보고 지금 이렇게 낙후된 형태로 못 받겠다하는 것은, 저로서는 결코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무슨 교육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노력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저는 위원님들이 제고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간사 김남훈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김남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 간사 김남훈

진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본질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진위원님께서서는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같은데는 왜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러지를 못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는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하고 판이하게 성격이 다릅니다.

전라북도에 보면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나열되어 있고, 이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을 보면은 도지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논하는 겁니다.

이 전라북도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적으로 또 도교육청, 집행청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학교급식을 갖다가 개선한다라고 하는 취지 같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건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될 문제지만,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보면 도지사가 절대적으로 이 조례를 실행하려고 도지사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에는 그 심의위원회도 부교육감, 체육, 보건, 교육과장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학부모단체 이런 걸로 짜여 있고, 이 충청북도를 보면 행정부지사,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기획관리실장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지사가 모든 이 조례를 추진하면서도 전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왈가왈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법상 앞으로 18일날 획기적인 법개정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와 봐야 아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바뀔 것이라라고

예측을 해서 우리가 갖다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 조례안을 갖다가 통과시킨다 안된다 찬성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볼 적에는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개 분야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해주시시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경남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안도 우리랑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경남은 이걸 받아들였던 말이지요. 그리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내 똑같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지금 11월 4일날 하기로 하고 위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키기로 말을 다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까?

● 고규강 위원

경상남도급식조례는 우리 것하고 틀려

요. 우리는 완전히 도지사에게 하게끔 만
들었어요.

● 진옥경 위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도지사, 여기에
서 도지사가 나옵니다. 경상남도는 해 가
지고.....

● 고규강 위원

규칙이니 도지사의 규칙이니 이런 게
없어요.

● 진옥경 위원

아니 경상남도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것이 결국 도지사의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 보
면 제6조.....

● 위원장 송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걸 시간을 갖더라도 이 자리에서
어느 도의 몇 조하고 어디하고 이걸 논하
는 게 아니고.....

● 진옥경 위원

아니 조항이 아니라 아까 조항이 나왔
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남
도지사나 또 경남도교육감 또 여기서에서
위원회의 설치부분에서도 지금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랑 거의 학교급식단위라든지 요런 것
들을 조직하는 이런 부분들만 다를 뿐이
지 기본 열개 우려하시는 이 부분을 받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본 청원에 대하여 협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 위원장 송대현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곧바로 표결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
언있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상남도의 선례를 말씀드렸습니
다. 저희와 거의 비슷한 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 조금 더 비교하는 시간을
갖기를 제안하면서 지금 당장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이
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후에 이
어서 각 지역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또 경

상남도면 경상남도에 대한 안을 비교 대조해 보고 저희들을 길을 찾을 방법을 좀 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 도민들이 우리 도교육위원회의 무성의함을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우리 고유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뜻을 가능하면 이른 시일내에 할 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타 시도의 예와 우리 것들을 비교해서 충분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정식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 진옥경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지금 진옥경 위원님으로부터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오후에 숙개해서 더 진지한 논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대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진옥경 위원님이 지금 오후에 경남안하고 비교할 시간을.....

● 진옥경 위원

왜냐 하면 경남은 수정없이 받아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방기입니다. 저는 오후에 시간을 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대현

진위원님 그 의지는 알았으니까 찬성을 묻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것이 표결로 가야 되는 일입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후에 이것을 조금 더 논의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가 바늘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찾아 길을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기수 위원님은 누구보다도 도민들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찬성하시지 않습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는 이런 저의 제안을 거절하시겠습니까?

● 이기수 위원

방금 진위원님한테 말씀이 자치급식조례는 우리가 제정하고 도의원들이 급식비

에대한지원조례 제정한다는 안도 제가 뭐가는 타협의 여지를 두고서 뭐가 잘해보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제시했던 사항이고, 또 한가지 우리 진위원님이 말씀했던 18일 이후에 무슨 법령을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만약 양쪽을 우리는 법이 생겼다는지 하면 도의원이 하든 우리가 했을 때 그거 냈던 서류가지고서 다시 내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 위법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을 그거를 위배해 가면서 어떠한 법이 나올지 모르면서 그걸 일단 받자는 얘기는 상당한 무리한 부분인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진옥경 위원

상위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 이기수 위원

위원장님 오후의 얘기는 결국은 서로 고집을 부린다는지 하면 아까 이런 부분까지 제시해 갖고 했다는지 하면 18일 이후에 법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 냈던 청원서 다시 내도 되는 얘기고, 또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듯이 그렇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급식조례내고 도의원들한테 우리가 잘 얘기해서 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같이 낸다면 우리 지원도

받고 애들도 잘되고 이런 순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게 될거라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현행법을 무시해 갖고서 조례를 제정합니까?

모든 법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두가지이상 제안을 했는데도 어거지로 자꾸 설득한다면.....

● 위원장 송대헌

개인적인 토론은 하지마세요.

저한테 의사진행 받아 갖고서 하세요.

● 이기수 위원

예, 예.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오후에도 이게 시간만 가는 얘기가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대헌

의사진행 받아서 얘기하시구요.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조금 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발언은 다음에 얻어서 하시고요, 진옥경 위원님이 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옥경 위원님의 오후에 속개하자는 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 진옥경 위원

어떻게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좀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오후에 논의하자는 부분은 조금전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위원장님 오후의 논의는 축조부들을 논의하는 것이고 뭐랄까 경남과 대비하는 부분이 아니라도 이렇게 짝막하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오후에 논의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주십시오. 여부를 말씀드려주십시오.

● 위원장 송대현

저기 재개의도 아니고 지금 아까 그 부분은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옥경 위원님의 개인의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장으로서.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경남안과 비교가 아니라 좀더 신중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자꾸만 계속 하시지말고 의결을 빨리 지읍시다.

● 위원장 송대현

알았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제안은 어떻게 합니까?

오후에 좀더 신중하게 논의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송대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부결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아직 표결을 안했기 때문에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근데 소위원회에서 표결합니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생각해 주실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태여 여기서 논의는 충분히 하고.....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 저한테 지명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주세요.

절차를 밟아주시고 표결은 아까 소위원회 본 청원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이고 내일 본회의에는 가서 또 의결 있겠죠. 보고가 있겠든지 있을 거고, 현재 소위원회의 오늘 논의된 채택의 건 이걸 청원을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채택

[제158회-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 채택에 대하여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을 채택하는데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님 한분 있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있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1표, 반대 4표로 본 청원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하셨는데 모두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 충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송대현, 간사 김남훈,

위원 고규강, 이기수, 진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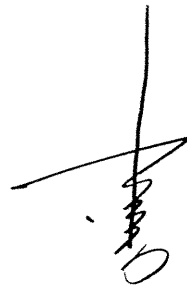
※ 부 록

- ▶ 청원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15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2. .

위원장 송대헌



(별첨 1)

청원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5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고
'03.11.7. (금)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청원 의건	

